

- 2023년 제1회 고양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 [정책지원관]

2023년도 제1회 고양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고양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I 채용분야 및 인원

※ 근무기간 2년 계약 이후, 사업의 계속성 및 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계약가능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직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근무 시간	담당업무
정책지원관 <상임위원회>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 40시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Ⅱ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3호(신규임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 설치 및 정원등에 관한 조례」 제4조

Ⅲ 응시자격 기준

□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 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직무분야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분야	응시 자격 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실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법제, 법률해석, 입법지원, 행정, 감사, 예산, 의원보좌 등 근무경력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p>※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p>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관련분야 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무기간 산정은 시간할 계산됨(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상위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VI 보수 및 복무

□ 보수 수준 및 근무 조건

○ 연 봉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임용분야	연봉액	산출기초
정책지원관	46,006천원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의 기준연봉 하한액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연봉 외 급여(수당 등) :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관련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조건 : 주 40시간(09:00~18:00,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복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
- 근무기간 : 임용약정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업무 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시 약정해지)

V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채용 공고 (붙임 파일)
- 시험공고 : 2023년 2월 28일(화)
- 접수기간 : **2023년 3월 9일(목) ~ 3월 13일(월)** <3일간>
- 접 수 처 : 고양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퀵서비스 택배, 팩스 인터넷 접수불가
 - ① 방문접수(대리 가능, 신분증 지참)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제출 전 고양시청 신관 1층(민원여권과)에서 해당직급 증지 구입 후 응시원서에 부착 (고양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 대리 접수, 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②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신관 지하1층
고양시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인사팀 인사담당자
-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우편발송 시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할 것(인사팀, 031-8075-3878)
- 해당 직급 응시수수료(7천원) 비용만큼 통상환증서(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 받을 분 기재 금지,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제출 불가
 - ※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00) 유의
- 봉투 겉면에 ‘고양시의회 일반 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응시표를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시험일정

시험공고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 장소	합격자발표
2023. 2. 28.(화)	2023. 3. 9.(목) ~ 3. 13.(월) <3일간>	서류전형	-	2023. 3. 17.(금)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정 공고 (3월말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 의회소식 -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합격 여부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니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 ※ 채용분야 관련 학력·경력 등 기준으로 3배수 이상 선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VI 제출 서류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클립·집게 등을 사용하여 연번 순서대로 1개로 묶어서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2호 서식] :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방문접수) 고양시청 신관1층 <민원여권과>에서 고양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부착
- (우편접수) 우체국에서 7,000원 상당 통상환증서 구입 후 동봉 발송(정부 수입인지 불가)
- 응시 수수료 : 고양시 수입증지 7,000원 첨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③ 이력서 1부 [별지3호 서식]

- 증빙자료(경력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력 기재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 불가)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해당 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별지6호 서식]

⑧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별지7호 서식]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 기재)
- 비상근(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전체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사항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 서류 제출**
- ⑩ **서류전형 제출 서류 1부** [별지8호 서식]
- ⑪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9호 서식]
- ⑫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및 원본 지참)
 - 어학능력성적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⑬ **주민등록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비동의자에 한함)
- ⑭ **기타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수상실적 등](해당자에 한함.)**
 - 사본 제출 가능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기재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하여 제출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 지참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

VII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복수지원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반환되며, 입증자료 중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방문 수령만 가능)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응시서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에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제3항제2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고양시의회 홈페이지(www.goyangcouncil.go.kr)에 공고합니다.
- 채용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팀(☎031-8075-387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